



Briefings of IMO Meeting

HTW 7 (15 Feb. ~ 19 Feb. 2021)

BRIEFING STATUS

☑ *Flash*

No.: IMO-0001-2021

(For sub-committee only 1 step as Flash)

Subject : News Flash of HTW 7

제7차 인적 요소, 훈련 및 당직 전문위원회(이하 'HTW7차')가 원격화상회의로 2021년 2월 15일에서 2월 19일까지 개최되었습니다. 금번 HTW 7차 주요 논의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1. 표준 훈련과정의 유효화(의제 3)

□ HTW 9 차 표준훈련과정 유효화 준비 및 계획

- 표준훈련과정 유효화를 위한 논의가 HTW8차로 연기됨에 따라, HTW8차 및 HTW9차 까지 표준훈련과정 개발 계획만 논의하고, 유효화 세부 작업 수행을 위해 HTW8차까지 통신작업반 (~'22년)을 개설하여 논의하기로 결정

- HTW 8차 표준훈련과정 유효화 계획

No.	설명	우선 순위	개발자	비고
신규	여객안전, 화물안전 및 선체 안전성 신규 표준훈련 과정	1	필리핀	7차에서 연기
	기관자원관리	1	필리핀	
1.22	선교자원관리	2	터키	
2.03	상급소화훈련	2	인도	
3.25	모든 항만시설 요원에 대한 보안 인식 훈련	2		
3.26	지정된 보안의무를 지닌 선원에 대한 보안훈련	2		
3.27	모든 선원에 대한 보안인식 훈련	2		

- HTW 9차 표준훈련과정 유효화 계획



Briefings of IMO Meeting

HTW 7 (15 Feb. ~ 19 Feb. 2021)

BRIEFING STATUS

☒ Flash

No.: IMO-0001-2021

(For sub-committee only 1 step as Flash)

No.	설명	우선 순위	비고
1.23	구명정과 구조정에 대한 숙련도	2	기존 8차 계획
1.24	고속 구조정 수련도	2	기존 8차 계획
1.20	화재예방 및 소화	-	추가

2. COVID-19 영향에 따른 선원 증서 대응(의제 4)

☐ COVID-19 대유행 기간 동안 의료적성기준 충족

- 미국은 해기사 면허 발급 시 건강진단서 제출이 필요한 현행 STCW협약에 대한 개선과 제(면허와 건강진단서분리)를 MSC 103차(21.5월)에 제출 계획임을 표명

☐ COVID-19 대유행이 선원의 자격증명 및 훈련에 미치는 영향

- 대부분의 회원국이 선원의 자격, 교육이수, 건강진단서 등 유효기간 연장 조치(21년3월 종료) 중임에 따라 임시조치 종료시점부터 발생하는 문제들에 관해 통신작업반을 개설 (~'22년)하여 논의하기로 결정

3. STCW 협약 이행 (의제 6)

☐ STCW 협약 당사국의 정보전달에서 발생하는 이행문제, 정보 제공의 적절한 전달을 보장하기 위한 기술 지원, STCW 협약 및 코드의 정보 전달

- 다수 회원국은 STCW 협약 이행을 위한 당사국 간의 정보전달 과정에서 문제점(누락, 부정확 등)이 많음을 언급, 보고 절차 개선의 필요성에 공감하였으며, 세부 방안 마련을 위한 HTW8차까지 통신작업반(~'22년)을 개설하여 논의하기로 결정

4. 1995년 STCW-F 협약의 전면검토 (의제 8)

☐ 1995 년 STCW-F 협약 제 4 장(당직근무) 제 1 조에 대한 개정

- 기관 당직 필요성만 인정되어 STCW-F 협약에 관련 규정을 신설하기로 하고, 해적 보안 당직 요건에는 어선원 해적당직 수행 부담 및 STCW-F 협약 비준 기피 우려 등의 이유로 반영되지 못함



Briefings of IMO Meeting

HTW 7 (15 Feb. ~ 19 Feb. 2021)

BRIEFING STATUS

☒ Flash

No.: IMO-0001-2021

(For sub-committee only 1 step as Flash)

- ☐ 해적 및 무장 강도에 대응 방법에 대한 어선 선원의 교육 결의서 채택 제안
 - 다수 회원국이 결의서의 필요성은 지지하지만, 결의서 내용 범위 명확화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HTW 8 차에서 논의하기로 결정
- ☐ 모든 어선 선원의 지속 가능한 어업 훈련을 제공하기 위한 협약개정 초안 제안
 - 어선에서 해양 플라스틱 감축 등을 포함한 해양환경 보호에 대한 의무 교육 과정을 신설 논의
 - 교육의 필요성은 공감하나, 실질적 이행 및 비준 여부 등을 고려할 때, 협약의 강제 항목에 포함하기보다는 권고 항목에 반영 필요성을 제기함 논의 시간 부족으로 HTW 8차에서 논의하기로 결정
- ☐ 제한수역에 대한 개정
 - 협약상의 제한수역(Limited Water) 정의 중 '어선장 및 사관'을 모든 어선원으로 적용 범위를 확장하는 개정이 결정됨.

5. 선원 전자 증서 및 서류 사용을 위한 STCW 협약 및 코드 개정안 개발 (의제 9)

- ☐ 선원 전자 증서와 서류 사용을 위한 STCW 협약 및 코드의 관련조항에 대한 통신작업반 보고서 검토
 - 논의 내용 및 결과
 - 통신작업반은 선원의 전자 증서 및 서류 사용을 위한 기준을 검토, STCW의 후속 개정안 권고
 - 전자 증서 도입으로 선원 증서, 서류 관리를 위한 행정적 부담 경감 및 문서의 효율적 관리기능을 언급하며, 도입에는 찬성하지만, 지속적인 논의의 필요성을 제기함에 따라 통신작업반(~'22년)을 지속적으로 운영하여 논의하기로 결정함.

6. 기타 의제 (의제 15)



Briefings of IMO Meeting

HTW 7 (15 Feb. ~ 19 Feb. 2021)

BRIEFING STATUS

☒ Flash

No.: IMO-0001-2021

(For sub-committee only 1 step as Flash)

☐ 극지 해역에서 운항하는 길이 24m 어선의 안전 조치에 관한 지침 초안의 11.5 문단(Para.) 검토

○ 배경

- 선박 설계 및 건조 전문위원회(SDC) 7차에서 개발된 지침 초안 내용 중 극지 해역에서 운항하는 길이 24m 어선에 승선하는 직원의 훈련에 관한 내용은 HTW 7차에서 논의토록 요청

○ 논의 내용 및 결과

- 훈련 부분을 기술한 11.5문단의 내용의 적절하며, 항해사(Deck Officer)와 기관사(Engine Officer)로 명시된 적용 범위에서 어선장(Skipper)를 추가 하였으며, 지침 상 일부 자구 수정이 이루어짐.

☐ 국제항해선박에서 육상전원공급장치(OPS) 안전 운영에 관한 임시 지침 초안 검토

○ 배경

- SSE 7차에서 개발한 OPS 안전 운영 지침 초안을 MSC 103차 제출 전 교육의 일부 요건에 대하여 HTW 7차에서 검토 요청

○ 논의 내용 및 결과

- OPS 선박 측 담당 직원은 OPS 시스템에 친숙화하여야 하며, PIC가 지정, PIC에 의해 승인된 교육을 받은 직원만이 물리적 연결, 전력 전송 및 OPS 분리 절차에 참여
- 고전압 OPS 시스템 PIC는 STCW협약에 따른 전자 기관사 증서 소지자 또는 3,000kw 이상 기관 출력 선박의 기관장, 1기사여야함
- 저전압 OPS 시스템 책임자는 STCW협약에 따른 전자 기관사 증서 소지자 또는 750kw 이상 기관 출력 선박의 기관장, 1기사여야함.
- 일부 회원국은 교육을 수반하는 행정적 부담 및 실질적 이행의 어려움 등의 이유로 선상 친숙화 훈련을 제외한 모든 교육요건의 삭제를 제안하는 등 다양한 견해가 제시되어, 논의가 종결되지 못하여 HTW 8로 이관됨. - 끝 -



Briefings of IMO Meeting

HTW 7 (15 Feb. ~ 19 Feb. 2021)

BRIEFING STATUS

☒ *Flash*

No.: IMO-0001-2021

(For sub-committee only 1 step as Flash)

P.I.C: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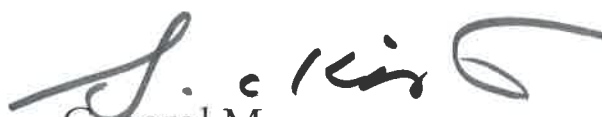
Moon Youngsu / Principal surveyor

Statutory System Certification Team

Tel: +82 70 8799 8342

Fax: +82 70 8799 8319

E-mail: conaudit@krs.co.kr



General Manager

Statutory System Certification Team

Disclaimer

Although all possible efforts have been made to ensure correctness and completeness of the contents contained in this information service, the Korean Register of Shipping is not responsible for any errors or omissions made herein, nor held liable for any actions taken by any party as a result of information retrieved from this information service.